

2013. 12. 20.

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안 번호	안건명	제안자 (제안설명)	비고
1576	충주시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주시장 (기업지원과장)	
1596	충주시 일자리종합지원센터 설치와 운영 조례안	충주시장 (경제과장)	
1597	충주시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충주시장 (생활환경과장)	
1598	충주시클린에너지파크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충주시장 (생활환경과장)	
1599	충주시 폐기물매립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주시장 (생활환경과장)	
1600	충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충주시장 (생활환경과장)	

산업건설위원회

조례안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안건명	제안일자	회부일자	상정일자	의결자	제안설명	비고
충주시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4	11.4	11.11	12.4	기업지원과장	
충주시 일자리종합지원센터 설치와 운영 조례안	11.26	11.26	12.4	12.4	경제과장	
충주시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11.26	11.26	12.4	12.4	생활환경과장	
충주시클린에너지파크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1.26	11.26	12.4	12.4	생활환경과장	
충주시 폐기물매립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26	11.26	12.4	12.4	생활환경과장	
충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26	11.26	12.4	12.4	생활환경과장	

2. 제안 설명 요지 및 주요내용

① 충주시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안 설명 요지

특례 지원 업체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 기업인의 사기 진작과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추가로 정하고, 기금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자 충주시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의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특례지원 업체 확대(안 제6조제2항)

- 기존 : 우수기업인, 유망중소기업, 향토기업, 청년창업기업
- 추가 : 여성기업, 벤처기업,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나. 충주시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의 이해충돌

방지 규정 신설(안 제8조의4)

다. 일부 업체 대출한도액 상향 (안 제10조제1항)

- 3억원 이내 : 일반업체
- 5억원 이내 : 수안보 관광특구(기준)
여성기업, 우수기업인, 유망중소기업(추가)

라. 이차보전 금리 우대 조항 신설(안 제10조제2항)

- 기준 : 구분없이 일반대출금리보다 3퍼센트 내외 이자 지원
- 신설 : 향토기업, 청년창업기업, 벤처기업,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충주시장이 지정한 우수기업인과 유망중소 기업은 일반대출
금리보다 4퍼센트 이자 지원

② 충주시 일자리종합지원센터 설치와 운영 조례안

○ 제안 설명 요지

충주시민의 구인·구직 상담, 직업 소개, 고용 정보 제공 등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을 위한 일자리종합지원센터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설치·운영과 기능(안 제3조)

– 청내 / 경제과

나. 시설과 구성(안 제4조~제5조)

– 상담 창구, 이용자 편의시설, 상담원 3명

다. 위탁 관련 규정(안 제6조~제8조)

– 위탁기간 : 2년, 1회 연장 가능

– 운영비 보조, 수탁자의 의무, 위탁의 정지와 해지

라. 다른 기관과의 협력(안 제9조)

마. 성과 분석(안 제10조)

③ 총무시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안 설명 요지

폐기물의 불법투기를 예방하고 효율적인 소각시설 운영을 위해 사업장 생활계폐기물 및 공사장생활계폐기물에 대한 수집운반처리수수료를 징수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를 공정하게 선정하고, 경제적이고 합리적인 대행업체 관리를 위해 대행자에 대한 대행실적 평가 및 대행원가계산을 실시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종량제 봉투에 담기 어려운 다량생활폐기물 (공사장생활폐기물,

사업장생활계폐기물, 마을단위종량제 등) 수집·운반·처리 방법 및

수수료 징수 근거 마련 (안 제3조제5항, 제6항, 제7항, 제10항, 안 제11조제4항)

- 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시 사전공고 등을 통한 업체선정 근거 마련(안 제6조제1항)
- 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자에 대한 대행실적 평가 근거 마련(안 제6조의2)
- 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대행 원가계산 실시 근거 마련(안 제6조의3)
- 마. 시장·수탁자가 반입수수료를 부과·징수할 수 있는 근거 신설(안 제12조의2)

[4] 충주시클린에너지파크 운영·관리조례일부개정 조례안

○ 제안 설명 요지

충주시클린에너지파크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반입 허용 폐기물을 추가하고, 반입수수료를 부과·징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가. 반입 허용 폐기물 추가(안 제4조)
 - 협약하였을 때 : 환경기초시설에서 발생하는 협잡물, 한국수자원 공사 충주권관리단에서 거둬들인 부유 폐기물
 - 시설 가동률이 떨어질 때 : 다른 지역의 가연성 폐기물
- 나. 시장·수탁자가 반입수수료를 부과·징수할 수 있는 근거 신설(안 제12조의2)

[5] 충주시 폐기물매립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안 설명 요지

매립시설 반입폐기물, 반입허용시간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중복 조항을 삭제하여 폐기물 매립시설을 원활하게 관리,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협약에 따라 반입을 허용하는 폐기물 조정(안 제5조)

- 국립공원관리공단 월악산관리사무소에서 수거한 폐기물
⇒ 환경기초시설에서 발생하는 협잡물

※ 국립공원관리공단 월악산관리사무소에서 수거된 폐기물은
제천시에서 반입

나. 지역주민 감시 조항 삭제(안 제12조)

- 매립시설 사용량이 크게 감소하여 감시요원 배치 필요성이
점차 사라지고, 상위법 시행령과 중복

다. 반입폐기물 반입허용시간을 현실에 맞게 조정(안 제13조)

- 하절기(3월 ~ 10월) 02:00 ~ 10:00 ⇒ 09:00 ~ 14:00
- 동절기(11월 ~ 2월) 03:00 ~ 11:00 ⇒ 09:00 ~ 16:00

[6] 충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안 설명 요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 시 부지면적에 진입도로 면적이 포함되는 것을 정확히 명시하고, 감시요원의 수당 등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관내 시설을 기준으로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 명시

(안 제3조제1항제2호나목)

- 퇴비화사료화시설 ⇒ 바이오가스화시설 등 시설

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 시 오해 소지가 있는 부분을

명확히 함(안 제3조제2호)

- 부지면적 ⇒ 부지면적(폐기물처리시설 설치에 따른 진입도로 면적 포함)

다. 주민감시요원 수당 단가 등 조정(안 제19조)

- 노동 강도에 맞게 수당 단가 개정

· 대한건설협회 건설부문 보통 인부임(1일 83,975원)

⇒ 고용노동부 최저임금(시간당 4,860원)

- 위촉기간(1년, 연임 가능) 신설

- 근무시간(8근무시간, 단축 가능) 신설

4.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① 충주시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 조례 개정안은 1)특례지원 대상 업체 및 2)대출한도액 상향 지원 대상 업체를 확대하고 3)대출금리 우대 업체 조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과 4)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용 심의위원회의 이해충돌 방지 규정을 신설하는 것을 핵심 내용으로 하고 있음.

안 제6조2항에서는 특례지원 대상 업체를 여성기업, 벤처기업, 기술 혁신형 중소기업으로 확대 하였으며,

안 제10조1항에서는 대출한도금액을 5억원까지 지원 받을 수 있는 업

체에 여성기업과 우수기업 및 유망 중소기업을 추가하고
안제10조2항에 향토기업, 청년창업기업, 벤처기업, 기술혁신형중소기
업, 우수기업 및 유망 중소기업에 대하여 일반대출 금리보다 4% 낮게
정할 수 있도록 하는 금리 우대조항을 신설하는 것은
중소기업의 경영안정과 육성발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이라 판단됨.
또한 안 제8조의 4에는 국민권익위 제도개선 권고사항(국민권익위 부
패영향분석과-4170)인 위원회 위원의 이해충돌 방지규정을 신설하여
기금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도록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여 짐.

② 충주시 일자리종합지원센터 설치와 운영 조례안

본 제정조례안은 직업상담, 직업소개, 고용정보제공, 직업훈련 안
내 등 종합적인 고용정보서비스 제공을 위한 충주시 일자리종합
지원센터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사항으
로 효율적이고 실질적인 일자리 지원업무 추진을 위해 조례의 제
정은 필요한 사항으로 판단 됨.

다만 조례안 제6조제4항을 보면 수탁기관의 인력구성에 시장이
관여하도록 규정한 것은 위탁자의 권한을 과하게 침해 하는 사항
이라 판단되어 삭제함이 타당하며,

안 제8조에서 정한 위탁 운영 정지 및 해지 사유 중 제1항 제1호의
“수탁자가 제7조의 자격 상실”부분은 “수탁자의 자격상실”로
수정하여 그 의미를 명확히 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판단 됨.

③ 충주시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 조례개정안은 소각시설의 효율적 운영과 종량제 봉투에 담기 어려운 공사장 및 사업장 생활계 폐기물에 대한 처리방안을 개선하고 수집·운반 수수료의 징수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의 공정한 선정과 사후관리를 위한 대행실적 평가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음.

다양생활계폐기물인 공사장 생활계폐기물과 사업장 생활계폐기물을 소각장에 반입처리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소각장 가동율을 높이고 생활계폐기물의 처리에 효율을 기할 것으로 기대 되며 필요한 사항이라 판단되며

안 제6조의2제2항에 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자의 평가에 관한 사항을 정함에 있어 환경부 지침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자에 대한 대행실적 평가기준 적용지침」을 준용하도록 규정한 것과 관련하여 입법에서 준용의 의미가 “어떤 사항을 규율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법규를 그것과 유사하나 성질이 다른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약간의 수정을 가하여 적용시키는 일”을 뜻함을 볼때 환경부 지침인 「생활 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자에 대한 대행실적 평가기준 적용지침」은 법규에 해당하지 않는바, 이를 준용하도록 조례에 규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 됨.

따라서 안 제6조의2제2항을 「폐기물관리법」 제14조제6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평가기준항목을 조례에 명시하고 그 시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에 정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임.

④ 충주시클린에너지파크 운영·관리조례일부개정 조례안

본 조례 개정안은 충주클린에너지파크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해 소각장 반입 가능한 폐기물을 확대하고자

안 제4조에 1)환경기초시설에서 발생하는 협잡물과 2)한국수자원공사 충주권 관리단에서 거둬들인 부유폐기물 그리고 3)다른 지역의 가연성 폐기물을 추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음.

현 충주시클린에너지파크 내 소각시설의 1일 시설용량은 100톤이며 1일 평균 실제 반입량은 60톤 정도로 시설 가동률은 60%대에 그침. 이와 같이 낮은 가동률은 시설수명 단축, 소각처리단가 상승, 수영장 및 주변지역마을 난방 추가 연료비 소요 등의 문제를 초래하고 있는 실정임.

막대한 비용을 투자한 시설인 만큼 시설의 처리용량 한도 안에서 최대한의 가동률을 유지하는 것이 경제성과 효율성을 얻을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인 만큼 반입 허용 폐기물을 확대 추가 하는 것은 필요 한 것으로 판단됨.

다만, 충주시클린에너지파크 시설은 2008년 2월 충주시 관내에서 발생하는 생활 쓰레기만 처리하는 것으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을 승인 받은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의3 및 동법시행령 제12조, 제35조의 규정에 의거 폐기물처리 지역 및 처리대상폐기물을 변경(추가)하여 승인(충북도지사) 받아야 할 것으로 변경승인 절차 이전에 조례로써 동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한지는 의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여 지며 또한 다른 지역의 가연성 폐기물 반입 사항은 인근 지자체

대부분이 자체 폐기물 처리시설을 갖추고 있어 실효성이 의심되며 사실상 주민 혐오 시설인 만큼 시설 주변 직간접 영향지역 주민 및 충주시 전체 주민의견 등을 살펴 신중하게 결정되어야 할 부분이라 판단 됨.

⑤ 충주시 폐기물매립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 조례 개정안은 관내 환경기초시설에서 발생하는 협잡물의 처리를 위해 안 제5조에 매립시설 반입허용 폐기물에 추가하고자 하는 사항과 필요성이 없어진 안 제12조의 지역주민 감시조항은 삭제하고 절기별 폐기물 반입 허용시간을 현실에 맞도록 조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음.

앞서 「충주시클린에너지파크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서 검토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 폐기물매립시설은 1997년 10월 충청북도지사로 부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승인을 받았으며 승인된 처리대상 폐기물 종류는 충주시에서 발생되는 생활폐기물에 한하고 있음. 환경기초시설에서 발생되는 협잡물은 사업장폐기물로 동 시설에 반입하여 매립하기 위해서는 매립시설 변경승인(충북도지사)이 있어야 할 사항으로 변경승인 절차 이전에 조례로써 동 사항을 규정하는 것은 의원님들의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라 보여 지며 안 제12조의 지역주민감시조항을 삭제하고 안 제13조의 폐기물 반입허용시간을 새벽시간에서 주간시간대로 변경하는 것은 폐기물 매립장 반입 폐기물 물량 감소에 따른 효율적 매립장 운영을 위한 조치로 필요한 사항이라 사료됨.

⑥ 충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 제3조에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에 있어 부지면적에 진입도로 면적이 포함됨을 명시하여 기준을 명확히 하고 규정의 적용에 논란이 없도록 하였으며, 안 제19조에는 주민감시요원 수당을 노동 강도 등을 감안하여 현실에 맞도록 고용노동부 최저임금을 적용하도록 하고 감시요원의 위촉기간 및 근무시간을 명확히 하여 주민감시요원 운영에 효율을 기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관련 법령 및 절차에 어긋남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5. 질의답변 요지

① 충주시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질의: 농업발전 기금처럼 지원 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답변: 농업발전 기금은 변동이차 보전방식이며, 중소기업 육성 기금은 고정이차 보전 방식으로 차이가 있으며, 중소기업 육성 기금은 대출연장 불가사항과 중복지원 불사사항 등의 차이가 있어 현 조례안의 방식이 타당하다는 의견임

② 충주시 일자리종합지원센터 설치와 운영 조례안

(1) 질의: 조례안 제6조제4항을 보면 수탁기관의 인력구성에 시장이 과하게 수탁자의 권한을 침해한다고 보여져 삭제하고 안제8조의제1항1호를 수탁자의 자격상실로 수정하는 것은 어떤지 ?

답변: 안 제6조제4항은 삭제하고 제8조1항1호는 수정하는것이 타당

[3] 총주시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질의: 안 제6조의2제2항의 환경부 지침 준용부분을 관련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것을 볼 때 조문을 수정 하여야 할 것으로 보여 지는데?

답변: 수정 하는 것에 이의가 없음.

[4] 총주시클린에너지파크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 질의: 수자원공사부유물만 협의를 하면 들어오나? 타 지역 쓰레기도 들어오나?

답변: 소각장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타 지역 쓰레기까지 받고자함.

(2) 질의: 수수료는 어떻게 처리하나?

답변: 위탁업체에서 받을 수 있도록 함

(3) 질의: 타 지역 쓰레기의 불순물 섞인 것은 어떻게 처리?

답변: 감시를 철저히 하고 협약을 통해 문제없도록 하겠음.

(4) 질의: 지역주민의견수렴절차를 거쳤는가?

답변: 두담마을 주민협의체와 협의했음

(5) 질의: 대소원 지역 주민은 하지 않았나?

답변: 하지 않았음, 당장 다른 지역 쓰레기를 반입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가동률 증대를 위해 가능성만 열어 놓는 것임.

(5) 질의: 도지사 변경승인 절차가 우선 아닌가?

답변: 조례를 개정해야 도에서 승인 해줄 것임.

[5] 충주시 폐기물매립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질의사항 없음.

[6] 충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질의: 매립시설 감시원 몇 명인가?

답변: 현재 근무하지 않으며 전에는 2명이었음.

(2) 질의: 감사카메라를 활용하면 2명이 굳이 필요할지?

인건비를 감안하여 조절이 필요할거 같은데?

답변: 근무시간대를 봄서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음.

(3) 질의: 수당은 어디서 지원되나?

답변: 주민지원기금에서 지원되고 있음.

6. 심사결과

[1] 충주시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2] 충주시 일자리종합지원센터 설치와 운영 조례안

: 수정의결

[3] 충주시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수정의결

[4] 충주시클린에너지파크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원안가결

[5] 충주시 폐기물매립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6] 충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붙 임>

□ **충주시 일자리종합지원센터 설치와 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장안**

충주시 일자리종합지원센터 설치와 운영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6조제4항을 삭제한다.

제8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수탁자의 자격상실

<수정안 조문 대비표>

개정안	수정안
제6조(위탁·운영비의 보조) ① ~ ③ (생략) <u>④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수탁자</u> <u>의 민간 인력 파견은 수탁기관</u> <u>의 장이 추천한 사람 중에서 전</u> <u>문성 등 적격성 여부를 판단하</u> <u>여 시장이 근무 여부를 결정한</u> <u>다.</u> ⑤ (생략)	제6조(위탁·운영비의 보조) ① ~ ③ (개정안과 같음) <u><삭 제></u> ⑤ (개정안과 같음)
제8조(위탁 운영의 정지와 해지) ① 시장은 수탁자가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위탁 기간 만료 전이라도 위탁 운영 을 정지하거나 해지할 수 있다. 이때의 배상 책임은 수탁자가 진다. 1. 수탁자가 제7조의 자격 상 실 2. ~ 4. (생략)	제8조(위탁 운영의 정지와 해지) ①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u>1. 수탁자의 자격상실</u> 2. ~ 4. (개정안과 같음)

□ 충주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충주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6조의2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평가는 주민 만족도 평가, 평가단 현장평가, 실적서류 평가 등을 포함하여 실시하여야 하며, 세부적인 평가기준 및 방법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수정안 조문 대비표〉

개정안	수정안
<p><u>제6조의2(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자 평가) ① 시장은 법 제14조제6항에 따라 폐기물 수집·운반업자 대행 실적 평가기준(주민만족도와 환경관리원의 근무조건을 포함한다)을 정하여 매년 1회 이상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u></p> <p><u>② 제1항에 따라 평가할 때에는 「생활 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자에 대한 대행 실적 평가기준 적용지침」(환경부)을 준용한다.</u></p> <p>③ ~ ⑥ (생략)</p>	<p>제6조의2(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자 평가) ①----- ----- ----- -----. ② 제1항에 따른 평가는 주민 만족도 평가, 평가단 현장평가, 실적서류 평가 등을 포함하여 실시하여야 하며, 세부적인 평가기준 및 방법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p> <p>③ ~ ⑥ (개정안과 같음)</p>